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단536094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1. 농업회사법인A 주식회사

2. B

3. C

4. D

변론 종결2016. 5. 3.

판결 선고2016. 5. 31.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39,632원 및 그 중 41,284,091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5. 1. 28. 접수 제1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부동산목록 제8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5. 3.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5. 3. 17. 접수 제3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0. 23.경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11. 4.경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5. 3.경 그 대출금을 신규대출의 형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2015. 3. 24. 위 (1)항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의 회수를 조건으로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반환채무도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가 폐업으로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2015. 6.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2015. 8. 26.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5. 9. 10. 국민은행에게 41,569,7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1. 형제인 피고 C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 28. 피고 C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11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별지 부동산목록 제8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3. 형제인 피고 D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3. 17. 피고 D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37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5) 피고 B는 2015. 1. 21. 및 2015. 3. 13. 당시 시가 합계 6,000여만 원 상당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전북 고창군 E 전 132m², F 전 159m²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127,700,000원, 우리은행에 대하여 50,000,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100,417,000원, 국민은행에 대하여 4,500여 만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와 피고 C,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상금 채권의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존재하고 있었고(형식적으로는 증여계약일 이후인 2015. 3. 24. 신용보증약정이 새롭게 체결되었으나, 이 신용보증약정은 실질적으로는 2013. 10. 23.경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을 대체하는 것이다),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피고 C에 대한 증여계약일로부터는 약 5개월, 피고 D에 대한 증여계약일로부터는 약 3개월 가량 경과한 2015. 6.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5. 9. 10.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 B이 피고 C,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부친인 G이 소유하던 재산으로서, 2012. 6.경 상속재산분할을 논의하던 중 피고 B 1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증여하였다가 모친의 사망 이후 모친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다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D은 그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라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G은 2012. 7. 10.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G으로부터 피고 B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G이 사망하기 전인 2012. 6. 20.인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도 전에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이전하되 나머지 상속인들이 사후에 이를 회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피고 C, D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위 피고들의 부친이 사망한 2012. 7. 10.로부터 2년 6개월 이상, 모친이 사망한 2013. 12. 31.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어서, 그 소유권 취득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C, D은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분배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지만, 피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G의 상속인인 자녀들은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라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해행위일인 2015. 1. 21. 또는 2015. 3. 13. 이전에 이미 피고 B, C, D 사이에서 피고 C, D이 상속재산의 분배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5. 1. 28. 접수 제1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별지 부동산목록 제8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2015. 3. 13.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은 피고 B에게 같은 등기소 2015. 3. 17. 접수 제3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혜선

별지